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김 주 수

I. 머리말

어느 나라나 가족법과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이념은 그 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가족법의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조선시대 후반기에 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家父長的 家族制度)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근원은 중국의 귀족조직인 종법제(宗法制)로서 그 특징은 부계(父系)·부권(父權)·부치(父治)·족외혼(族外婚: 동성동본 사이의 금혼을 말한다)·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종법제의 특징이 우리 가족제도에 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족법에는 이러한 종법제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

어느 나라나 한 때는 예외없이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봉건사회라는 전제군주가 통치하던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제도였다. 그 후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이룩되면서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는 부부 중심의 가족제도로 대체되어 나갔다.

따라서 가족법과 가족제도는 각 개인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이념과 산업사회의 생활양식과 부합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가족법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가족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II. 가족법의 개정경과

우리 민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여섯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가족법분야에서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남성우위의 봉건적 가부장제가족제도의 요소를 완화시키고자 1962년에 법률 제1237호로서 「법정분가(法定分家)」제도를 창설하였다. 그 후 1977년에 법률 제3051호로서 가족법을 개정하여, 혼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낮추고(제808조 제2항),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成年擬制)를 신설하였으며(제826조의 2), 부부의 귀속불분명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고(제830조 제2항), 협의이혼(協議離婚)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도록 하였다(제836조 제1항). 그리고 부모의 친권을 공동행사제로 개정하였다(제909조 제1항).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 단서를 삭제하고, 상속분에 있어서 처의 상속분을 늘리고(제1009조 제3항), 피상속인의 호적내에 있는 여자상속인의 상속분을 남자상속인과 균등하게 하였으며(제1009조 제1항·제2항),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를 신설하였다(제1112조~제1118조).

이러한 개정을 통해 가부장적 요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가족제도가 가족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도시화 되자 대가족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한 가족법으로는 변화하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법과 현실 사이에 큰 틈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며,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족법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 1989년 11월 19일 정기국회에서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되어 1991년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1989년에 개정된 가족법의 해석론상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친족관계

1. 현황 및 주요논점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는데, 첫째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를 동일하게 8촌 이내로 하고 인척(姻戚)은 4촌 이내로 하며(제777조), 둘째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시켰으며(제768조),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하도록 하였으며(제775조 제2항), 계모자(繼母子)관계와 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를 폐지하였다.

개정법상 친족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이다.

2.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개정전 법에서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모자관계로 인정되고 있었다. 계모자관계란 자의 부가 자의 모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그 여자(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에 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모자관계를 말한다(제773조). 그리고, 적모서자관계란 부(父)의 인지를 받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父)의 처 사이에 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모자관계를 말한다(제774조). 그러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가부장제도와 결합된 제도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적모나 계모에 의해서 그 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적모서자관계는 과거의 첩제도(妾制度)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처에게는 모욕적인 제도였다. 더구나 계부자(繼父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자관계는 법정모자(法定母子)로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인척관계로 하여 상호간에 혼인장애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개정법에서는 이것이 폐지되었다.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나 적모서자 사이의 애정을 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계모나 적모를 어머니라고 불러왔다고 해서 법률에서도 반드시 어머니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으로 모자관계이나 아니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률상 문제되는 것은 친권(親權)과 상속권(相續權)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전 법에서는 계모나 적모가 당연히 계자나 서자의 친권자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그 아이에게 불리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이들간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사이가 매우 나빠서 계모나 적모가 계자(繼子)나 서자(庶子)에게 상속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계모와 계자간에 실질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에 계모나 적모는 계자나 서자에게 상속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생각을 하는 계모나 적모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 방법이 없는 등 폐해가 많았다. 더구나 본처(本妻)가 사망한 경우, 첩(妾)의 자녀나 부(夫)가 사통(私通)하여 낳은 자녀에게 당연히 본처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윤리관념에 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전통법(大典會通)에 의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계모자나 적모서자 사이는 모자관계가 아니었고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일본의 구민법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 민법을 제정할 당시 이를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로 오해하고 우리 민법에 도입한 것

이다. 그 후 일본은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계모자·적모서자관계를 법정모자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만큼 이들이 친모자 사이 이상으로 애정이 깊은 경우도 있고,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거나 심지어는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경우도 있는 등 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법의 구조상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를 법률상의 모자관계로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개정법은 혼인외(婚姻外)의 자(子)가 인지(認知)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協議)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하였는데(제909조 제4항), 계모자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친권자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즉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이혼시나 혼인외의 자를 인지할 때 모(母)를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그 자의 친권자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반면[다만 이 경우 모의 재혼을 이유로 친권자변경청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제909조 4항 단서 참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부(父)를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는 부(父)의 본처(자의 적모)나 부(父)의 재혼한 처(자의 계모)도 친권자가 되어 친권자에 또 다른 변동이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거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을 공동(共同)으로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 본처가 있거나 재혼을 하면 친권자가 세 사람이 되어(생부, 생모, 적모 또는 계모) 친권행사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 친권자가 세 사람이 되어서는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친권자변경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친권자인 부(父)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변경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개정법의 구조상 계모자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법정모자관계로 인정할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비록 모자관계는 발생하지는 않으나 인척관계는 있으므로 함께 사는 때에는 상호간의 부양의무(扶養義務)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법률상으로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는 시부모와 며느리관계와 비슷하다.

이미 발생한 계모자·적모서자관계도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1991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소멸하도록 규정한 개정민법 부칙(附則) 제 4 조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위에서 본 와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모자·적모서자관계를 폐지한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관계라고 해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모자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간단히 입양신고(入養申告)를 함으로

써 친생자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계모나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친족회(親族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입양신고를 하면 이러한 제약이 없는 완전한 모자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과 현실이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계모나 적모가 계자나 서자의 후견인(後見人)도 되지 못하면서 부양의무만 지우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후견과 부양의무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며, 계모나 적모가 실제로 그 자를 보살피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 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적모가 순위에 따라 무조건 후견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위와 마찬가지로 입양의 절차를 거쳐 친권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한 모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다.

3. 개선방향

개정법이 친족의 범위를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구분없이 8촌으로 하고 인척을 4촌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계혈족과 처족(妻族)인척이 확대되어 개정전에는 친족이 아닌 자가 친족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부족(夫族)인척 중 부(夫)의 8촌이내의 부계(父系) 혈족은 4촌으로 좁혀졌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족관념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조정하였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친족이나 아니냐 하는 것의 법적 효과가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획일적인 친족범위의 한정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호주제도(戶主制度)

개정법에서는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고(제980조), 호주상속비용(제983조),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胎兒)의 지위(제988조), 대습상속(代襲相續: 제990조), 호주상속인의 분묘(墳墓) 등의 승계규정(제996조)을 삭제하였으며,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제991조), 여호주(女戶主)의 가(家)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하더라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980조 제 4 호 삭제). 호주의 한정재산·금치산선고청구권과 입적동의권을 삭제하고(제9조·제12조·제78조 제 1 항),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去家禁止)(제790조), 호주의 부양의무(제797조)를 삭제

하였으며, 가족의 불명재산(不明財産)에 대한 가족의 공유추정(共有推定) 규정(제796조 제2항) 등을 됴으로써 호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리하였다.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女戶主) 규정(제792조)을 삭제함으로써 여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승계할 남자가 그 가에 입적하더라도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것을 막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시 또는 부(父)가 사망한 때에 처와 부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787조).

그러나 호주제도는 봉건적인 가부장제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계혈통의 승계제도에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의 호주제도가 혼입된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순풍미숙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시에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호주제도를 없애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민법에 남겨 놓겠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이며 결국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혼인(婚姻)

1. 현황 및 주요논점

혼인에 관해서도 가부장적 요소와 남녀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호주제도와 더불어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동성동본불혼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외에는 불평등규정이 거의 대부분 고쳐진 셈이다.

약혼해제사유 중 「폐병(肺病)」을 삭제하고 대신 「불치의 정신병」을 약혼해제사유로 삽입하였으며(제840조 제3호), 약혼해제사유 중 「2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1년 이상의 생사불명」으로 고쳤다.

부부동거장소규정을 개정하여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불성립시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제826조 제2항). 부부공동생활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제833조).

이혼할 때의 자의 양육책임규정을 개정하고,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

는데, 이혼할 때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제837조 제1항),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37조의 2).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였는데,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면접교섭권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이다.

2. 면접교섭권

개정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이것은 이혼후에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나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기타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민법 제837조에서 규정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의 특별한 형태로 제837조의 해석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방문, 서신교환, 전화 등 접촉방법을 정하여 자녀와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나 바른 성장에 해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면접교섭권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를 아무 때나 찾아가서 괴롭힐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오해이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 자체가 엄격히 제한된 방법으로 자녀와 접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것을 재판상 허용하는 경우(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에는 자녀와 접촉하는 방법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토요일이라든지, 방학 때 한번씩이라든지,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라는 식으로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해진다.

실제로 당사자의 충실한 협조 없이는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이 줄어들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교섭권의 제한 내지 배제의 사유가 된다. 이를 신설된 주된 이유는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하고 또 자녀도 그를 만나기를 원하며, 서로 접촉하게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양육자 쪽에서 서로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허용하는 경우 그 접촉방법은 철저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였다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조정 내지 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면접교섭권은 성질상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자변경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내용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은 끝을 내고, 공동경제의 청산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名義)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특유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재산취득에 있어서의 다른 일방의 공동생활의 내외에 있어서의 기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부가 영업을 하거나 봉급생활자이고 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경제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실체에 부합되는 청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청산을 청구하게 되는 측은 대개의 경우 처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청산 이외에, 또 하나는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혼 후에 양당사자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 또 약자(대개는 처의 경우가 많다)가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강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종(忍從)하게 되어, 결국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입법론으로 주장되어 오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제 839조의 2).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의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839조의 2 제2항)는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準用)된다.

재산분할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다. 혼인재산은 부부중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이든가, 공유재산(共有財産)이 되는데(제830조), 이러한 재산 중에서 혼인전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 후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각자가 취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혼인 후 이혼하기까지의 재산이 바로 그러한 재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전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한 몫이나 장래의 퇴직금 기타의 수입도 가산하여 이를 분배하는 것이 부부재산관계의 적절한 청산이 될 것이다. 부부간의 협력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직접 공헌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한 공유지분(共有持分)의 산정도 가능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노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가사노동 등이 협력이 되며, 부(夫)가 영업주체가 되어 그 수익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 경우에는 그 분담작업이나 가사부담이 협력이 되어 그 부(夫)의 특유재산에 처는 공유지분을 가지게 된다. 공유지분은 혼인 후의 증가재산(增加財産)에 대하여 균등하다는 견해도 나오겠지만,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에 비추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수급권의 취득, 영업상의 신용의 확립, 의사·변호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공헌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혼 후의 부양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혼금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은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이 인도적인 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방법은 금전금부나 현물금부에 의한다. 현물금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족하며, 그 평가액까지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금전금부를 일시금(一時給)으로 하느냐 분할금(分割給)으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금으로 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정의 변경(예컨대, 의무자 측이 빈곤해진데 반하여 권리자측이 여유가 생긴 경우)을 이유로 이혼시의 협의나 심판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제978조 참조). 다만 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현재에는 별로 없으나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시 되어 그 수입에 대

해 일시급이 아닌 분할급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경우, 의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는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수입을 일일이 입증하여 매번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다.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우선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행하고 상황에 따라 그 액수를 변경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법리론상으로 이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 공유이론(共有理論)이나 명의신탁(名義信託)이 주장될 수도 있겠으나, 현행민법의 소유권제도나 부부재산제의 체계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4. 개선방안

(1) 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폐지

동성동본인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제도인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우리나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두 번째 골간이다. 이 제도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첫 번째 골간인 호주제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근친혼(近親婚)을 금지하는 규정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근친혼 금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부계(父系)혈통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근친혼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생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해로운 범위까지만 금지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유전학의 성과에 의하면 8촌이 넘으면 전혀 해로운 바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계혈족을 표시하는 동성동본인 사람끼리는 무조건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사이에서는 윤리적인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이다. 같은 비율의 유전인자를 받는 모계혈족과는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부계혈족과는 무제한적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제도는 과학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의 혼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계혈통중심의 가

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확립된 이 제도때문에, 젊은이들의 사랑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혼인이 가문과 가문사이에서 중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교제에 의하여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을 하게 되는 자유결혼이 많다. 이러한 젊은이들 사이의 사랑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금지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성격의 것도 아니다. 동성혼 금지의 부당성은 동성혼 부부의 혼인신고를 한시적(限時的)으로 허용한 두 차례의 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 제정을 통해 명확해졌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 보장 방안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산정기준과 그 실행방법이다. 재산분할액의 산정기준은 현대 부부재산법의 기본이념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모두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그 재산형성에 기여했느냐를 일일이 입증하게 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근본정신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때에는 외형적인 수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는 동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혼이 임박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처분해 버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상황을 고려하여 그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V. 양자제도(養子制度)

1. 현황 및 문제점

개정전 법에서의 양자제도는 전통적인 가(家)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의 성격을 먼치 못하고 있었다.

가를 위한 양자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사후양자(死後養子)제도(제867조), 서양

자(孀養子)제도(제876조), 유언양자(遺言養子)제도(제880조)를 삭제하고,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하였다.

입양요건(入養要件)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동의(同意)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제871조 단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제872조), 부부공동입양 제도를 부부평등하게 하도록 하되,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874조).

이 중 개정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입양요건상의 문제점이다.

개정전 법에서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부모, 부모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이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락(承諾)을 하고, 그러나 적모, 계모 또는 후견인이 승락을 할 때에는 친족회(親族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개정법은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에 대한 승락을 하도록 하였다(제869조). 이것은 원래의 개정안대로 통과된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하려고 한 취지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전제(제909조)에서, 부모 모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법정대리인」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모서자 관계·계모자관계가 폐지되는 전제에서는 단서규정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대락권자(代諾權者)를 「법정대리인」으로 통일함으로써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부모의 일방만이 친권자일 경우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그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일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의사가 전혀 무시된다는 점이다. 친권자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자가 다른 데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승락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상의 논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락하는 경우이다. 개정전 법에서는 후견인이 대락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 의하면,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대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869조 참조). 원래의 개정안이 이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였던 것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므로 후견인이 대락하는 경우에 굳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원래의 개정안(改正案 제871조)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대락만으로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차질이 일어난 것

이다. 이것은 입법상의 큰 과오이다. 개정법 제871조에서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 입양에 대하여 동의를 할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입양대탁(入養代諾)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양자로 되는 자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이다. 원래의 개정안 제871조를 수정하려면 개정법 제869조에 단서로서 「후견인이 승락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은 현행법보다 개악(改惡)된 셈인데, 해석론으로서는 15세 미만자도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의 입양에서 요구되는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자의 보호를 충실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입양의 동의와 입양의 대탁은 그 성질이 다르며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후견인이 대탁할 때에는 제871조를 유추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전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입양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도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원래의 개정안은 이 규정을 「미성년자를 양자로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미성년자의 입양이 인신매매 기타 타산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진실로 양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할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제871조 단서).

2. 개선방안

양자법의 세계적인 추세가 양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자가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양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양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여 외형상 친생자인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풍토에서 양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정법에서 이점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언젠가는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가계승계(家系承繼)를 위한 양자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자(子)를 위한」 양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즉 완전양자제도(특별양자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VI. 친 권(親權)

1. 현황 및 주요논점

친권이란 아버지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의무를 말한다. 개정전 법에는 부권우위(父權優位)의 친권규정이 많이 있었는데 개정법은 이를 고쳤다.

부모가 혼인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協議)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제909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一方)이 공동명의(共同名義)로 자를 대리(代理)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으나, 다만 상대방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920조의 2).

개정법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혼시 친권자 지정문제, 친권자변경의 문제이다.

2. 이혼시 친권자 지정(離婚時 親權者 指定)

개정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에 반드시 친권자를 정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한 경우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재판상이혼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직권주의(職權主義)를 적용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90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을 반대해석하여, 공동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었는데도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공동친권이 된다고 해석하

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올 수 있으나, 제90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없는 한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친권자변경

부모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은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나 하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하면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후견(後見)이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후견이 개시된다면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으면 그가 후견인이 되고,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데(제935조 제1항·제932조), 만약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제909조 제4항에 의한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II. 상속(相續)

상속인(相續人)의 범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8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4촌까지로 축소하였다(제1000조 제4호). 상속분에 있어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혼인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균등하게 하였고, 호주상속인에게 5할을 가산해 주던 제도도 없었다(제1009조 제1항).

부(夫)가 처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처가 부(夫)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과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하였던 것을 완전히 부부평등하게 고쳤다. 즉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하였으며(제1009조 제2항), 처가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개정전법에서는 부(夫)가 단독상속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부(夫)가 사망한 경우의 처의 상속순위와 마찬가지로, 부(夫)는 처의 직계존속 즉 장인·장모와 공동으로 처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였다(제1003호).

대습상속(代襲相續)도 부부평등하게 고친 결과 처가 사망하고 나서 부(夫)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처의 친정부모 즉 장인이나 장모가 사망한 경우 처가 받을 상속분을 부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된 점이 특이하다(제1003조 제2항).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이나, 개정전 법과는 달리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의 인척관계소멸에 있어서 부와 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대습상속에 있어서 부와 처를 차별할 이유가 없었으며, 개정전 법에서는 기혼여자의 상

속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상속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夫)의 대습상속권을 부인한 면도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혼여자의 상속분도 동등하게 된 점, 상속의 기본이념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입계되는 상속인들의 부양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법의 체계가 가산상속(家産相續)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상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의 처에 대한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상속법에 신설된 제도로는 기여분(寄與分)제도와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가 있다. 기여분제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제1008조의 2). 예컨대, 금료를 받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을 크게 도운 아들이나, 부와 공동으로 가게를 경영한 처의 경우, 또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한 아들이 있는 경우, 그 아들이나 처에게 그 기여한 것을 상속분과는 별도로 가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 아들이나 처에게 자기가 공헌한 몫을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있고, 또 개정법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된 것과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분(寄與分)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상속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기여한 바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권이 있는 자라도 그 기여의 정도가 특별히 큰 경우에 한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란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하였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제1057조의 2). 예컨대 부부로 함께 살아왔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양신고가 되지 않은 양자의 경우, 또는 특별히 보살펴 준 친구나 양로원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는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VIII. 맺 음 말

이상에서 가족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과 민법의 제정이래 가족법의 개정경과 및 1989년에 개정된 가족법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한 것들에 대한 해석론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입법론적 과제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았다.

비록 1989년의 가족법의 개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타협안(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체계상 서로 맞지 않게 된 부분도 있고 명백한 입법상의 과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단 해석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번 개정에 의하여 가족법상 가부장적 요소가 많이 제거되고 남녀평등의 실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녀평등이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바탕이라는 인식하에서, 이번 개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과 미비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호주제도는 현재의 과도적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동성동본불혼제도도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으나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친족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근친혼의 금지 범위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전혀 고쳐지지 않은 점은 법체계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자제도에 있어서는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와 더불어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 가정법원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주수, “가족법개정안”, 「민사법개정의견서」(서울: 박영사, 1981).
- _____, “개정가족법의 해설과 논점”, 「판례월보」 1990년 5월호.
- _____, “개정가족법해설”, 「고시연구」 1990년 2·3·4월호.
- _____, “개정상속제도”,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_____, “부(夫)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법률신문」 1990년 5월 24일.
- _____, “특별양자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배정숙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1년.
- _____, 「민법개론」(제4판) (서울: 삼영사, 1990).
- _____, 「친족·상속법」(제4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1).
- 박병호, “개정민법상의 가제도”, 고시계 1990년 5월호.
- _____, “개정양자제도의 관견”,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_____, “친족관계의 개정과 제문제”, 「사법행정」 1990년 2월호.
- 박병호교수 환갑기념 논총발간위원회, 가족법학논총. 박영사, 1991.

- 배경숙, “개정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서정우, “개정민법의 문제점”, 「고시계」 1990년 4월호.
- 이경희, “친족의 범위”,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제8권 제1호.
- 이희배, “호주제도의 개정”,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조미경, “재산분할청구권”, 「사법행정」 1990년 9월호.
- 최진섭, “이혼배우자의 자녀양육에 관한 법제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년.
- 한봉희, “개정가족법의 과제와 범위”, 「법률신문」 제1956호.
- _____, “개정가족법의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김용한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1년.
- _____, “개정혼인법상의 제문제”,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 _____, 「개정 가족법론」(대왕사, 1990).